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7,805,000	20,934,150
일반회계	567,939,000	17,038,170
특별회계	129,866,000	3,895,980
공기업특별회계	95,458,000	2,863,740
상수도사업	18,711,000	561,330
하수도사업	22,337,000	670,110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54,410,000	1,632,300
기타특별회계	34,408,000	1,032,240
주택사업	440,000	13,200
의료보호기금사업	1,848,000	55,440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사업	35,000	1,05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4,441,000	433,230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719,000	261,57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688,000	80,640
주차장설치사업	1,328,000	39,840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2,333,000	69,9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34,000	19,02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42,000	31,26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900,000	27,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46,62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